

1. 일반 사항

- 회의명 : 제6차 선박계통·설비 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Ship Systems and Equipment)
- 기간/장소 : 2019.03.04. ~ 08. / IMO본부(런던)
- 참가자 : 80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 약 400명
- 대한민국 : 총 9명

2. 주요 의제 목록

- SOLAS II-1 및 III장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의 안전 목표 및 기능요건 개발
- 생존정의 환기요건 개발
- Polar Code(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 관련 후속 작업
- 신조 및 현존 로로 여객선의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의 화재사고 및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SOLAS II-2장 및 관련 Code의 검토
- MSC.1/Circ.1315에 대한 개정
- 화물선 및 여객선의 선실 발코니에 설치되는 개별 식별형 화재탐지장치의 고장 격리 요건과 관련한 FSS Code Ch.9의 개정
-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 요건 개발
- 신선에 대해 개정된 SOLAS II-1/13규칙 및 II-1/13-1규칙과 기타 관련 규정
- 선박육상전력공급에 대한 지침 개발 및 SOLAS II-1 및 II-2에 대한 개정
- IMO의 안전, 보안 및 환경 관련 협약 이행에 대한 통일해석
- 단일 폴 및 후크 장치의 부하 이탈능력과 관련한 LSA Code 4.4.7.6.17항 개정에 대한 제안
- 표준화된 구명설비 평가 및 시험성적서 양식의 개정
- SSE 7의 잠정의제 및 격년(Biennial) 의제
- 기타 의제

3. 의제별 논의 결과

3.1 SOLAS II-1 및 III장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의 안전 목표 및 기능요건 개발

SOLAS III장(구명설비) 규정에 IMO GBS 개념을 도입하여 전면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선박계통·설비 전문위원회(SSE)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그 작업에 앞서 이번 SSE 6차 회의에서는 우선 IMO GBS Framework, Tier I과 Tier II에 해당되는 목표, 기능요건 및 예상성능을 개발하여, 이를 SOLAS II-1 및 III장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MSC.1/Circ.1212)에 반영하였으며, 그 개정안을 MSC 101차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SSE 6차 회의에서 논의되고 개발된 SOLAS II-1 및 III장의 대체설계 및 배치에 관한 지침(MSC.1/Circ.1212)에 IMO GBS 구조를 우선 도입함으로써 SOLAS III장(구명설비) 전면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 전, 각 IMO 회원국들은 완전한 규정 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IMO GBS 규정을 SOLAS III장 제38규칙, 구명설비의 대체설계 및 배치 규정에 우선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금번 SSE 6차에서 개발한 동 지침은 향후 SOLAS III장(구명설비) 전면 개정 시, 규정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생존정 환기요건 개발

생존정 탑승자의 체온 상승을 개선할 수 있도록 IMO는 환기장치를 생존정에 설치하기 위한 규정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SSE 6차 회의에서는 기존 SSE 4차(17년 3월 개최)에서 합의된 환기량(CO₂ 농축 임계값 5,000 ppm 및 5 m³ /h/person)과 SSE 5차(18년 3월 개최)에서 합의된 환기량(5 m³ /h/person) 사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상호간 의견이 나뉘어 결론 내지 못하였다.

또한, 환기요건 시험에 관한 기준인 Res.MSC.81(70)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전폐형 구명정 외 생존정 환기요건도 함께 논의하고자 아래의 작업 지침과 함께 회기간 통신문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결과 보고서는 SSE 7차(20년 3월 개최예정) 회의에 제출되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전폐형 구명정 환기장치 시험을 위한 Res.MSC.81(70) 개정(안) 최종화
- Res.MSC.81(70) 개정(안)을 바탕으로 MSC/Circ.980 등 다른 IMO 규정의 후속 개정이 필요한지 식별
- 부분폐형 구명정 및 구명뗏목 내부의 미세기후와 관련한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요건에 대한 LSA Code 개정(안)을 바탕으로 전폐형 구명정 외 생존정의 환기요건 개발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정립
- 전폐형 구명정 외 생존정의 환기요건에 대한 시험 기준인 Res.MSC.81(70) 개정(안)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후속 개정이 필요한 IMO 규정 식별
- SSE 5차에서 합의된 전폐형 구명정 환기요건에 대한 내용에 추가하여 CO₂ 모니터가 설치되는 경우에 대한 LSA Code 개정(안) 개발

3.3 Polar Code(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 관련 후속 작업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구명설비에 적용될 수 있는 IMO 잠정 지침을 이번 SSE 6차 회의에서 개발하였으며, MSC 101차(19년 6월 개최)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번 SSE 6차 회의에서는 시간제약으로 인해 최대 구조예상시간이 반영된 구명설비 시험 및 평가 요건들이 검토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논의를 회기간 통신작업반에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SSE 7차(20년 3월 개최 예정)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3.4 신조 및 현존 로로 여객선의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의 화재 사고 및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SOLAS II-2장 및 관련 Code의 검토

IMO에서는 신조 및 현존 로로 여객선의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의 화재 사고 및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현행 협약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SSE 6차 회의에서는 SSE 5차(18년 3월 개최) 이후 동 건에 관한 상세 논의를 위해 개설된 통신작업반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화재 예방, 탐지, 소화 요건들을 반영한 잠정 지침을 개발하였다. 동 지침은 MSC 101차 회의에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금번 SSE 6차 회의에서 EU가 제출한 FIRESAFE II 연구의 주요 주제와 구조에 대한 검토를 위해 IMO는 FSA(Formal Safety Assessment)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결정하였으며 결과 보고서를 SSE 7차(20년 3월 개최 예정)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동 의제와 관련한 SOLAS 및 FSS Code 개정은 시간적 제약으로 이번 SSE 6차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SSE 7차(20년 3월 개최 예정) 회의에서 FIRESAFE II 검토 결과보고서와 함께 논의 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기 논의와 별개로 화재 안전 시스템 및 설비의 유지 보수 및 점검에 대한 지침인 MSC.1/Circ.1432에 대한 개정 필요성 또한 이번 SSE 6차 회의에서 식별 되었으며, 해당 작업 진행을 위해 향후 IMO MSC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3.5 MSC.1/Circ.1315의 개정

MSC.1/Circ.1315는 가스운반선의 화물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드라이파우더 소화설비 승인기준이지만, 동 IMO 회람서 내에 소화약제인 드라이파우더의 정의 및 시험방법에 대해 서로 상이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소화성능 검증 시험에 대한 상세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실제 업무에 상당한 혼선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MSC.1/Circ.1315를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IMO SSE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SSE 6차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나 개정 작업이 최종 완료 되지 못하였으며, 회기간 통신작업반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SSE 7차(20년 3월 개최 예정) 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 소화약제는 포타슘(Potassium) 기반의 소화약제를 사용
- 소화약제가 인체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
- 소듐(Sodium) 기반 소화약제는 사용을 제한
- 화재시험 시 시험 종류로 Jet Fire를 반드시 포함
- 소화 약제 시험온도는 55도 이상 적용

3.6 화물선 및 여객선의 선실 발코니에 설치되는 개별 식별형 화재탐지장치의 고장 격리 요건과 관련한 FSS Code 개정

FSS Code 화재탐지장치 요건은 구획 식별형 시스템(탐지기 또는 수동화재경보장치가 작동한 구획만 식별하는 시스템)과 개별 식별형 시스템(화재를 탐지한 탐지기의 형식 또는 수동 화재경보장치가 작동한 정확한 위치까지 식별하는 시스템)

으로 구분되며, 개별 식별형 시스템의 결함 시 분리되어야 하는 요건을 검토 하고자 작업 의제가 개설되었으나 이번 SSE 6차 회의 에서는 관련 회원국의 제출 문서 부재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3.7 선박 하역설비 및 원치 요건 개발

선박 하역설비 및 원치와 관련한 사고 조사결과에 이은 후속 조치로 IMO는 강제적 요건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SSE 6차 회의에서는 하역설비와 하역장구의 관리 체계, 승인, 목표기반기준 도입에 관하여 논의하고 SOLAS 규정 개발을 완료하였다.

SSE 6차 회의에서 개발한 규정은 안전사용하중과 관계없이 모든 하역설비에 적용됨이 원칙이지만 1,000kg 미만의 안전사용하중을 가진 비교적 작은 하역설비는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설비 및 적용에서 제외되는 설비를 규정에 나열함으로써 협약의 명확한 적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상기에 추가하여, IMO에서는 SOLAS 규정과 함께 사용되는 지침 개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회기간 통신작업반 개설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SSE 7차(20년 3월 개최 예정)에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3.8 신선에 대해 개정된 SOLAS II-1/13 및 II-1/13-1 규정에 대한 검토

선박설계조건전문위원회(SDC)에서 항해 중 개발될 수 있는 여객선 수밀문 요건 및 수밀문 압착사고 방지 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선박 설비에 관한 규정이므로 SSE 전문위원회에 이관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SSE 4차(17년 3월 개최) 회의에서 IMO는 수밀문이 인명 및 선박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과 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위험성 평가, 수밀문 기능과 호환 가능한 안전 솔루션”을 SSE 5차(18년 3월 개최)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완성도 높은 의견들이 제출되지 못하였다.

SSE 6차 회의에서도 관련 문서가 제출되지 못함에 따라 IMO는 더 이상 동 의제에 관해 논의하지 않고 작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3.9 선박 육상전력공급에 대한 지침 개발 및 SOLAS II-1 및 II에 대한 개정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 정박 중 육상전력 공급 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침 개발을 현재 IMO에서 논의 중이며, 이번 SSE 6차 회의에서는 아래 사항을 반영한 지침(안)을 개발하였다.

- 지침은 안전한 운용과 통일된 설비의 기준을 식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호환성 평가, 시스템 배치 및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요건은 설비 운용 범위에 벗어나는 사항으로 지침에 포함시키지 않음.

- 현재 유효한 국제기준을 참조로 지침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인 IEC/ISO/IEEE 80005-1 같은 규정은 향후에 지침에 반영할 예정임.

- 인적 요건이 지침에 반영되어 있으나 IMO 인적 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식별함. 개발된 지침의 검토를 위해 IMO는 회기간 통신작업반 개설을 승인하였으며 검토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SSE 7차(20년 3월 개최 예정)에 제출될 예정임.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기술적 요건들이 존재하고 항만에 육상전력공급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기반시설 투입 비용이 상당하므로 전 세계 선박들이 공통적으로 육상전력을 이용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임을 인지하였으며 강제적 협약인 SOLAS 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10 IMO의 안전, 보안 및 환경 관련 협약 이행에 대한 통일해석

○ SOLAS Reg.II-1/28, II-1/29, II-1/30 관련 IACS UI(통일해석) SC 242의 개정 :

SOLAS Reg.II-1/28.20에 대한 통일해석은 불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삭제함.

SOLAS Reg.II-1/29.10에 대한 통일해석은 이중 조타계통의 기능요건을 명확화한 것에 추가하여 추진기능을 포함하였으며 단일 조타계통이 설치되는 경우 주조타장치 또는 보조조타장치의 단일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조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FMEA(Failure Mode Effective Analysis, 하나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됨을 분석)를 적용함.

SOLAS Reg.II-1/29.6.10에 대한 통일해석 관련해서는 단일 조타계통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조타 액추에이터 요건을 포함하여 명확화함. 이중 조타계통의 경우에도 조타장치의 동력장치 고장 또는 작동의 경우를 조타 액추에이터의 고장 또는 작동으로 수정함.

SOLAS Reg. II-1/30.2에 대한 통일해석과 관련하여 이중 조타계통을 갖춘 선박의 경우, SOLAS Reg. II-1/30.2를 각 조타계통에 적용하였음.

상기의 조타장치 이중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 통일해석에 합의하고 MSC 101차(19년 6월 개최)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함.

- 소방원의 통신을 위한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에 대한 요건 (SOLAS Reg. II-2/10.10.4) :
규정에서 요구하는 소방원의 통신을 위한 쌍방향 휴대식 무전기는 IEC Publication에서 정의된 위험구역 (hazardous areas) Zone 10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승인된 안전형식의 것이어야 하며 장비 그룹과 온도 등급에 대한 최소요건은 소방원에 의해 접근가능한 위험구역에 대한 가장 엄격한 요건에 적합할 것을 명시한 통일해석 초안에 대해 합의함. 이 통일해석은 MSC 101차(19년 6월 개최)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
- 자유낙하구명정의 5 Knots 진수시험 적용 명확화 :
자유낙하구명정의 경우 5 Knots 진수시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통일해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협약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다수 회원국의 의견이 있었으며, 따라서 SSE 7차(20년 3월 개최 예정)에서 협약 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결정함.
- 선박의 승하선 수단을 위한 구명부환 배치에 대한 통일해석 (SOLAS II-1/3-9, MSC.1/Circ.1331, SOLAS Reg. III/7.1) :
다음의 통일해석 초안이 합의 되었으며 MSC 101차(19년 6월 개최)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함.
“해당되는 경우, SOLAS II-1/3-9.2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MSC.1/Circ.1331에 따라 자기점화등 및 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은 SOLAS Reg. III/22.1.1 또는 III/32.1.1에서 요구하는 구명부환의 최소 수량 및 배치를 고려할 때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 장치 및 관련 장비의 설계온도 적용 (IGC Code 11.3.6항) :
다음의 통일해석 초안이 합의 되었으며 MSC 101차(19년 6월 개최)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함.
“IGC Code 3.1.2항 및 3.1.3항에서 허용하는 바와 같이 코퍼담 대신에 연료유 탱크가 최후부 화물창의 후단 또는 최전방의 선수부에 설치된 경우, 이 탱크 위의 노천갑판구역은 IGC Code 11.3.6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화물지역으로 간주한다. 즉, 물 분무장치의 배관장치 및 관련 장비는 925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정기적으로 무인화되는 기관실 보일러의 화재탐지 및 경보 :

통일해석 안이 화재위험성이 있는 보일러 연돌과 케이싱 내의 탐지장치를 면제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현재 SOLAS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므로 통일해석 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일반적 의견에 따라 승인되지 못함.

- 기관실과 요소(urea) 및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용액 탱크가 설치된 구역과의 경계격벽의 보존방열성에 대한 통일해석 :
다음의 통일해석 초안이 합의되었으며 MSC 101차(19년 6월 개최)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함.
“선택적 환원촉매 시스템(SCR), 배기가스 환원장치(EGR) 또는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EGCS)을 위한 요소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 탱크가 기관실과 분리된 구역에 설치되는 경우 구역의 보존 방열성을 결정함에 있어 기타기관구역의 정의와 유사한 구역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야 한다.
(10)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의 경우,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는 또는 전혀 없는 탱크, 공소 및 보기실; 또는
(7) 화물선 및 36인 이하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의 경우, 기타기관구역 기관실과 용액 탱크 구역 간의 경계격벽은 적어도 A-0급의 보존 방열성을 가져야 한다.”
- 고정식 분말소화장치의 선상 방출시험에 대한 통일해석 초안 :
다음의 통일해석 초안이 합의되었으며 MSC 101차(19년 6월 개최)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함.
“선상 시험은 모든 모니터 및 호스에 드라이 케미컬 분말을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나, 분말의 모든 양을 배출할 필요는 없음. 이 시험은 건조 공기를 모든 배관에 불어 넣는 것을 대신하여 배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도 사용 될 수 있음. 그러나 테스트 완료 후 단지 드라이 케미컬 분말의 잔류물을 씻어내기 위해 모든 모니터 및 호스에 건조한 공기가 흐르게 해야 함.”
- Res.MSC.365(93)에 의해 개정된 SOLAS Reg. II-2/9.7.5의 주석(footnote)에 대한 통일해석 :
조리실 조리기구 보호를 위한 고정식소화장치에 제공되는 CO₂ 양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인화성 액체가 있는 장소에 대한 요건인 SOLAS Reg. II-2/10.6.3.1.1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의 통일해석 초안에 합의하였으며 MSC 101차(19년 6월 개최)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함.
“SOLAS Reg. II-2/9.7.5.1.1.3 및 SOLAS Reg. II-2/9.7.5.2.4의 주석에서 인용하는 ISO 15371:2009는 프리엔지니어드 조리실 배기덕트의 고정식 소화장치에 대한 적합한 성능기준의 예로서 주어진 것이다. 프리엔지니어드

어드 시스템이 아닌 CO₂ 고정식 소화장치는 SOLAS Reg.II-2/10.6.3.1.1(인화성 액체가 있는 장소)의 규정 또는 주관청이 인정하는 다른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 화물선의 조타기실로부터의 탈출수단과 관련한 SOLAS Reg.II-2/13.4.2 규정의 명확화 :
제안된 통일해석은 SOLAS 개정 사항으로 식별하고 접근해야 함. 또한, 직접 개방갑판으로 통한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개방갑판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작은 선박이라 하더라도 수직사다리나 출입용 소형 창구를 설치함으로써 조타기실로부터 개방갑판까지 직접 통하는 탈출설비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SSE 6차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함.
- 위험물의 운송 - 환기횟수 요건 :
제안된 통일해석은 SOLAS Reg.II-2/19.3.5.4에 독성물질이 아닌 인화성과 독성 액체를 적재할 수 있는 화물창 내의 전용 빌지 펌프가 있는 장소임을 언급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SSE 6차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함.
- 굴착작업에 기인한 긴급사태 관련 규정의 통일해석 :
제안된 통일해석은 MODU Code 자체가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번 SSE 6차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함.
- 탱커선의 불활성 가스 장치 관련 요건의 통일해석 :
제안된 통일해석은 FSS Code 15장 2.2.3.2.3항에서 제시한 차단밸브 또는 금속 플레시블 호스가 스플피스 또는 스펙터클 플랜지와 동일한 수준의 차단을 제공하지 않고 이에 추가하여 벤트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의 누설탐지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SSE 6차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함.
- SOLAS Reg.II-1/43.6, Gas Carrier, Chemical Tanker의 비상전원 관련 통일해석
SOLAS Reg.II-1/43.6 비상전원 규정을 IBC와 IGC Code에 추가 적용하는 것에 관한 통일해석에 합의하였으며 MSC 101차(19년 6월 개최)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함.

3.11 단일 폴 및 후크 장치의 부하이탈 능력과 관련한 LSA Code 4.4.7.6.17 규정 개정에 대한 제안

부하이탈이 가능한 단일 폴 및 후크장치를 가지는 구명정 및 구조정에 대한 적절한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LSA Code 4.4.7.6.17항의 개정을 제안하는 의제이며, 부하이탈능력을 가지는 단일 폴 및 후크장치에 LSA Code 4.4.7.6.7, 4.4.7.6.8 및 4.4.7.6.15항의 요건을 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는 의견에 대부분 회원국이 동의하였음. 다만, 무부하이탈능력(구명정 또는 구조정이 완전히 물 위에 떠 있을 때에 이탈시키는 능력)만을 가지는 단일 폴 및 후크장치에 대해 이들 조항을 면제해 주는 기존 문구의 적합성은 일부 회원국이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SSE 7차(20년 3월 개최 예정) 회의에서 이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3.12 표준화된 구명설비 평가 및 시험성적서 양식의 개정

LSA Code와 Res.MSC.81(70)의 개정 내용을 통합하여 표준화된 구명설비 평가 및 시험성적서 양식(MSC/Circ.980) 개정을 제안하는 의제이며, 이번 SSE 6차 회의에서 제출된 문서는 그 양이 방대하고 번역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방대한 분량의 개정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문서의 구조적 개선을 반영하여 SSE 7차(20년 3월 개최 예정)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3.13 기타 의제

- 인정시험기관 및 할론 저장 시설에 대한 GISIS 모듈 :
2010 FTP Code에 따른 화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정 시험 기관 목록 및 할론 저장 시설과 관련한 새로운 GISIS 모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임.
- LSA Code 4장과 Res.MSC.81(70) 테스트 요건 불일치 :
LSA Code 4장과 Res.MSC.81(70) 개정 과정 중에 발생한 누락사항을 강조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문서이며,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협약 개정 승인을 위해 수정사항을 MSC 101차(19년 6월 개최)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 GMDSS 현대화 작업과 연계된 SOLAS 3장 및 4장 개정안 :
GMDSS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SOLAS 3장 및 4장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SSE 6차 회의에 전달하고자 IMO 사무국에서 제출한 문서이며, SSE 전문위원회에서는 향후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IMO 항해통신수색구조전문위원회(NCSR)에서 설립한 통신작업반에 그 결과를 통보하기로 결정함.
- MSC.1/Circ.1205 개정 제안 :
Res.A.1116(30) 승인에 따라 관련 문서인 구명정 운용 및 정비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 MSC.1/Circ.1205를 개정하고 IMO-Vega database의 SOLAS 3장 9규칙에 이를 Note로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이며, IMO는 이를 반영한 수정 사항을 MSC 101차(19년 6월 개최) 회의에 요청하

기로 결정함.

- LSA Code 6.1.1.3항 개정안 수정 :
구조정을 선측에 붙들 수 있는 수단으로 바우싱 라인이 적절하며 그 의미가 충분히 명확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으며, 또 다른 제안인 LSA Code 개정 문구에 협약 적용일자를 명기하지는 의견은 이미 IMO 해사안전위원회 결의서 커버 페이지에 적용 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다수 회의국의 의견이 있었음.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MSC 101차 회의에 채택을 위해 제출하기로 결정함.
- SOLAS Reg.11-2/30에 기밀(Gastight)에 대한 정의 신설 및 기밀시험 기준 개발 제안 :
IMO 문서에 기밀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여 기밀 관련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SOLAS Reg.11-2/30에 기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시험기준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이며, 이번 SSE 6차 회의에서 이 의제는 기술적인 사항이 다루어져야 하므로 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신규 작업의제로 신청하여 줄 것을 문서 제출 국가에 요청하고 해당 의제에 관한 논의를 종료함.
- LSA Code 6.1.6.1항 생존정 승정 사다리의 손잡이 요건 검토 제안 :
안전한 통행을 위해 갑판 위에 설치된 승정용 사다리 손잡이 간격을 분석하고 관련 요건인 LSA Code 6.1.6.1항 개정을 검토하고자 제안된 문서이며, 이 의제는 강제 협약 개정 사항이므로 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신규작업의제로 신청하여 줄 것을 문서 제출 국가에 요청하고 해당 의제에 관한 논의를 종료함.
- 사고에서 계속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 검토 및 그 시스템을 위한 배전 방법 :
긴급한 상황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시스템 관련 SOLAS 규정을 검토하고 여객선의 비상전원 규정(SOLAS Reg.11-1/42)과 안전한 귀항(SOLAS Reg.11-2/21,22)의 전체적인 평가 결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적인 실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 SOLAS 개정 또는 대체 가능한 설계 지침서를 위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이며 별도 후속 조치는 이번 SSE 6차 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음.
- 승하선수단의 구조, 부속품 및 부착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MSC.1/Circ.1331 개정 제안 :
승하선 수단을 사용하는 동안 그 구조, 부속품 및 부착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MSC.1/Circ.1331을 개정하여 체결핀에 대한 세부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이며 이번 SSE 6차 회의에서 이 의제는 기술적인 사항이

다루어져야 하므로 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신규 작업의제로 신청하여 줄 것을 문서 제출 국가에 요청하고 해당 의제에 관한 논의를 종료함.

3.14 SSE 7의 잠정의제

- 생존정의 새로운 통풍요건 개발
- Polar Code(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 관련 후속 작업
- SOLAS 3장 및 LSA Code의 개정
- 신조 및 현존 로로 여객선의 로로구역과 특수분류구역의 화재사고 및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SOLAS 11-2장 및 관련 Code의 검토
- MSC.1/Circ.1315에 대한 개정
- 단독형 화재탐지시스템이 설치된 화물선과 여객선 선실에 대한 결함 고립 요건 검토 및 FSS Code 9장 개정
- 선박 하역설비 및 윈치(Lifting Appliances & winches)의 요건 개발
- SOLAS 11-1장 대체 설계에 대한 기준의 안전 목적 및 기능 요건
- 선박 육상 전력공급에 대한 지침 및 SOLAS 11-1 및 11-2장에 대한 개정
- 단일 폴 및 후크 장치의 부하이탈능력과 관련한 LSA Code 4.4.7.6.17항 규정 개정에 대한 제안
- 표준화된 구명설비 평가 및 시험 성적서 양식(MSC/Circ.980)의 개정
- 다이빙 시스템의 안전 코드(Res.A.831(19)) 및 고압탈출시스템의 지침 및 규정(Res.A.692(17))의 개정
- 잔잔한 해역에서 시행되는 5 Knots 진수시험 적용 대상에서 자유낙하구명정을 제외시키기 위한 SOLAS 3장, LSA Code 및 Res.MSC.81(70) 개정판
- IMO의 안전, 보안, 환경관련 협약 규정에 대한 통일 해석
- SSE 8차 잠정의제 및 Biennial 의제
- 기타의제



김규철

- 1985년생
- 2008년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 현 재 : 한국선급 협약업무팀 책임검사원
- 관심분야 : 국제 협약 동향
- 연락처 : 070-8799-8321
- E-mail : convention@krs.co.kr